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9.5.16.(목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 진 흥(02-2100-2601)	담 당 자	정 훈 사무관 (02-2100-2517)	
	금감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(02-3145-5550)		황 진 하 팀장 (02-3145-5552)	
	금감원 국제협력국 선임국장 온 영 식(02-3145-7890)		박 재 흥 부국장 (02-3145-7903)	

제 목 : 한국, IOSCO Enhanced MMoU(EMMoU) 가입 서명

1 개요

□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 연차총회(호주 시드니)에 참석 중인 금융위(증권위) 최준우 상임위원과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,

○ 5.15.(수) 금융위·금감원의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 (Signing Ceremony)을 하였음

※ 연차총회는 5일간('19.5.13.~5.17.) 개최중이며, 동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MMoU 및 EMMoU에 가입한 총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

▣ EMMoU('16.8월 도입)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*보다 가입조건이 강화됨

* 자문·협력·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(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)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'18.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, 영국 등에 이어 전세계 10번째로 가입*('18.12.6.)하였음

* EMMoU 가입요건인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.1 정회원, ACF만 보유한 기관은 A.2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

< EMMoU 가입요건 (ACFIT) >

- ① **A** : 회계자료 확보(compelling **Audit** work papers)
- ② **C** :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(**Compelling** attendance for testimony)
- ③ **F** : 자산동결 조치 협조(assisting with asset **Freezes**)
- ④ **I** :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(compelling **Internet** service provider records)
- ⑤ **T** : 통화자료 확보(compelling **Telephone** service provider records)

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(기대효과)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- (향후계획) 금융위·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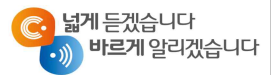
<참고> IOSCO 및 EMMoU 개요

☞ 보도자료 '한국, IOSCO Enhanced MMoU[EMMoU] 회원 가입(2018.12.6.)' 참조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fsc@korea.kr



1 IOSCO (국제증권감독기구)

*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

□ **(연 혁)** '83년 설립된 IOSCO는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%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

□ **(위 상)** '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SB와 공동으로 G20에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(International Standards Setter)로 위상 격상*

* FSB는 IMF와 World Bank의 ROSC(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)와 함께 IOSCO MMoU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채택

□ **(회 원)** 각국의 증권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

○ 정회원(ordinary) : 129개 증권감독기관

○ 준회원(associate) : 31개 일부 감독권한 보유 기관

○ 관계회원(affiliate) : 65개 자율규제기관, 거래소 및 국제기구

※ 우리나라(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)는 '99년 정회원으로 가입 (舊 증감원은 '83년 가입)

2 EMMoU 주요 내용

□ **(상호지원 등)** 양해각서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서 상대국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(허용 가능한 최대한 지원)

○ 동 EM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

□ **(자료 지원범위)** 감독당국 보유 정보, 개인·기관으로부터 취득·제공받은 정보(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, 회계정보), 진술청취를 위한 출석 강제,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지원,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

□ **(정보사용)** 위반행위 조사·제재 집행, 민사소송, 행정적 제재절차, 자율규제기관의 감시, 형사 조사·기소,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

□ **(비밀보장 등)**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답변 등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제3자(다른 감독기관 등)의 지원시 비밀유지 등 절차 마련